

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0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3. 22.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'99. 12. 21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지원단의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시 상위법령에 미근거한 불필요한 규제사항 지적, 정비 지시.
- 동조례 제5조 제2항의 위탁관리계약체결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용허가조건 제10조(사용인의 행위제한), 제11조(사용허가의 취소)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인 제6조(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)를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제6조(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) 삭제

붙임 : 1.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2. 신·구조문대비표

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)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6조(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) ①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운영관리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회관의 운영을 불성실하게 할 때</u></p> <p><u>2. 위탁사업을 이해하지 아니한 때</u></p> <p><u>3. 회관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사업으로 사용할 때</u></p> <p><u>② 제1항 이외에 시장이 회관의 운영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u></p>	<p>제6조(삭 제)</p>